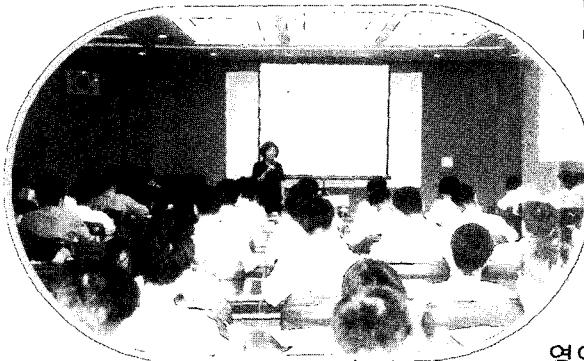




환경성적표지제도(TYPEIII) 시행을 위한 기업 설명회



지난달 환경부 환경경제과 주관하에 이필재 과장(환경부 환경경제과), 최병철 사무관(환경부 환경경제과), 안병훈 교수(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환경/정책 연구센터장), 이승규 교수(KAIST 생산경영연구실)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환경성적표지제도(TYPEIII)에 대한 설명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종회의실에서 있었다. 본자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.

<편집부>

I. 환경성적표지제도(TYPEIII) 도입 방안

1. 개요 및 도입필요성

◎ 개요 : ISO에서 진행중인 3가지 유형의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규격 (ISO14020's)의 하나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품의 친환경성이 비교우위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제품의 원료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, 사용, 폐기처리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(Life Cycle Assessment)기법을 활용하여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사용된 자원이나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조사·분석하고,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숫자 또는 그래프 등으로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이다.

◎ 도입필요성

- '92년 리우【유엔환경개발회의】선언("의제21")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증진
- LCA의 기술적측면을 내세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 대두
- 국제표준화규격(ISO14020's) 제정 완료

2. 추진경위

◎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방안 논의 ('99 하반기)

- 운영골격 및 운영주체별 기능
- 운영절차 및 운영주체별 업무규정(운영규정) 등 운영요령
- LCA 일반지침서
- 환경성적표지 일반지침서

◎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(2000년 2월)

-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중 (2000년 8월초 예정)



◎ 국가기반산업 및 기초소재별 국가표준 환경성정보(LCI INFRA D/B) 구축 ('99~2001)

- 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해 LCA를 수행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가기반 및 기초소재에 대한 국가표준 환경성정보를 구축
- 에너지, 수송, 폐기물, 수자원, 화학제품, 철강제품, 광물자원, 펄프 및 제지 등 총 110여개의 LCI D/B 가 구축될 예정

◎ 2001년 2월 제도 도입예정

- 제도도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몇몇 제품에 대해 “제품군별 환경성적표지 세부지침서”를 개발 예정
- LCA수행기준, 환경성적표지 정보전달 형태 및 방법 등 개발

3.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동향

◎ 환경라벨링 관련 국제표준화규격(ISO14020's)의 분류

분류	규격	주요 특성
제1유형 (TYPE I)	ISO 14024('99.4)	대상제품신청→기준개발(환경성, 품질요건, 소비자정보)→대상제품선정(0~20%)
제2유형 (TYPE II)	ISO14021('99.9)	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환경적 우월성을 관련 규격의 적용범위 내에서 주장함.(재활용, 퇴비화가능, 자원사용감소 등)
제3유형 (TYPE III)	ISO/TR14025('00.3)	제품의 정량적인 환경영향정보를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. LCA기법을 주로 활용

※ ISO/TR 14025 문서의 성격 : 제3유형 환경성적표지제도의 잠정적인 적용을 위하여 발행한 하나의 가 표준, 이는 ISO에서 기술보고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3가지 유형 중 TYPE II 형태로서 발간된 후 3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3년동안 연장할 것인지, 국제표준으로 전환할 것인지,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결정됨.

◎ 제3유형의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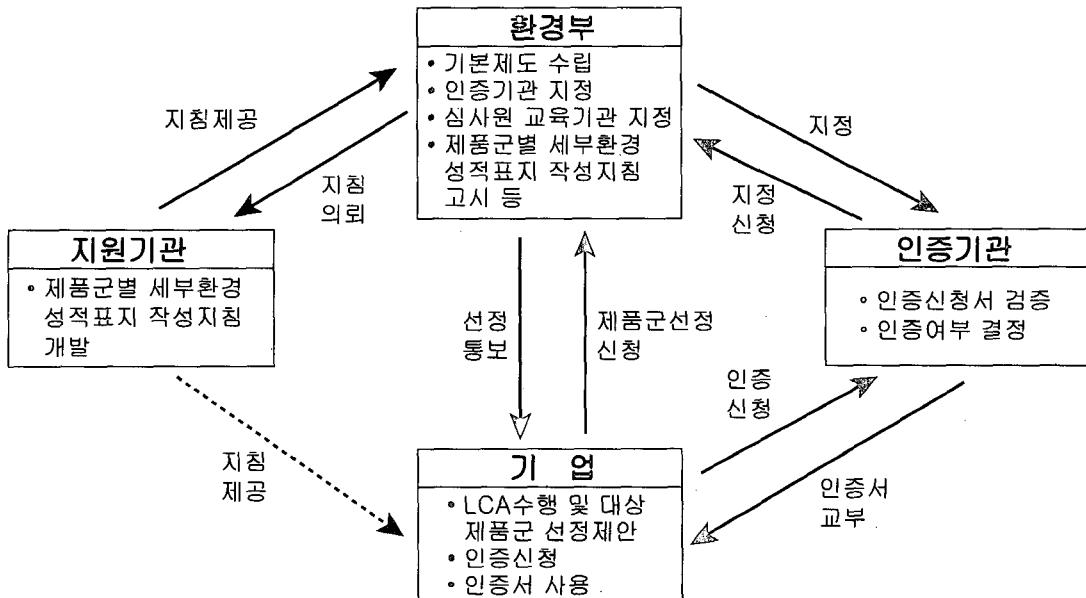
- 1997. 4. 일본교토회의 – 환경성적표지제도의 국제표준화제정 결의
- 1997. 12. 마드리드회의 – 정보의 제공형태, 전달대상자, 제도의 본질 논의
- 1998. 6. 샌프란시스코 회의 – 기술보고서의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
- 1998. 12. 시드니회의 – ISO/TR14025 문서초안 소개
- 1999. 2. 코펜하겐회의 – 각 국가별 검토의견 취합 ISO/PDTR14025 문서소개
- 1999. 6. 서울회의 – 각 국가별 검토의견 논의
- 2000. 3. 기술보고서 완료
- 2000. 6. 스톡홀름회의 – 국제워크숍 개최(각국가별 TYPE III 시행사례발표)

4. 외국TYPE III제도 시행 사례

구분	스웨덴(EPD)	일본(PEIDS)	캐나다(EPDS)	독일(도입준비중)	덴마크(도입준비중)
일반원칙 및 제도골격	- '환경제품선언에 관한 규정' 적용 - ISO14040's에 의한 LCA수행	JEMA(기술자문위원회) 에의한제도도입	-펄프 및 제지협회가 운영 -제조업체에 의한 정량적인 환경성정보개발	-독일환경청(UBA)도입 준비	-도입준비 운영골격, 인정기관, 인증기관, 운영기관, 기술위원회, 자문위원회 고려

구 分	스웨덴(EPD)	일본(PEIDS)	캐나다(EPDS)	독일(도입준비중)	덴마크(도입준비중)
환경성적표지 개발	-LCA방법론 준수 -스웨덴CPM의 데이터 품질보증절차준수	-LCI방법론 준수 -GWP에 대해서는 LCA 방법론준수	-EPDS양식에 대한 작성 지침서 개발 및 제공	- LCA방법론 준수	- LCA방법론 준수
선언의형식과 전달	-인증기관및정보출처를 알리는 '정보라벨' 부착 -EMS, 자활용, 함량관련 정보포함	-포스터, 브로셔, 인터넷 사이트, 테이터쉬트제공, 정보라벨등의 부착	-데이터쉬트형태로서 환경경영활동, EMS, 신림 경영체계등에 관한 정보수록	- 미정	- 산업별 다르게 적용
인증및사후관리	-공인인증기관에의한 인증과 3년을 기본원칙으로 한 사후관리	-제3자검증	-인증에관한 증빙서류 제공(Terra Choice)	- 미정	- 공인인증기관

5. 국내 제도 운영골격



6. 인증기관 지정

- ◎ 인증기관 지정자 : 환경부 장관
- ◎ 인증기관 지정 기준
 -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
 - 심사원 2인 이상 보유자
 - 심사원관리, 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· 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의 구축
- ◎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
 -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(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)
 - 심사원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 - 인증심사 운영계획서



7. 심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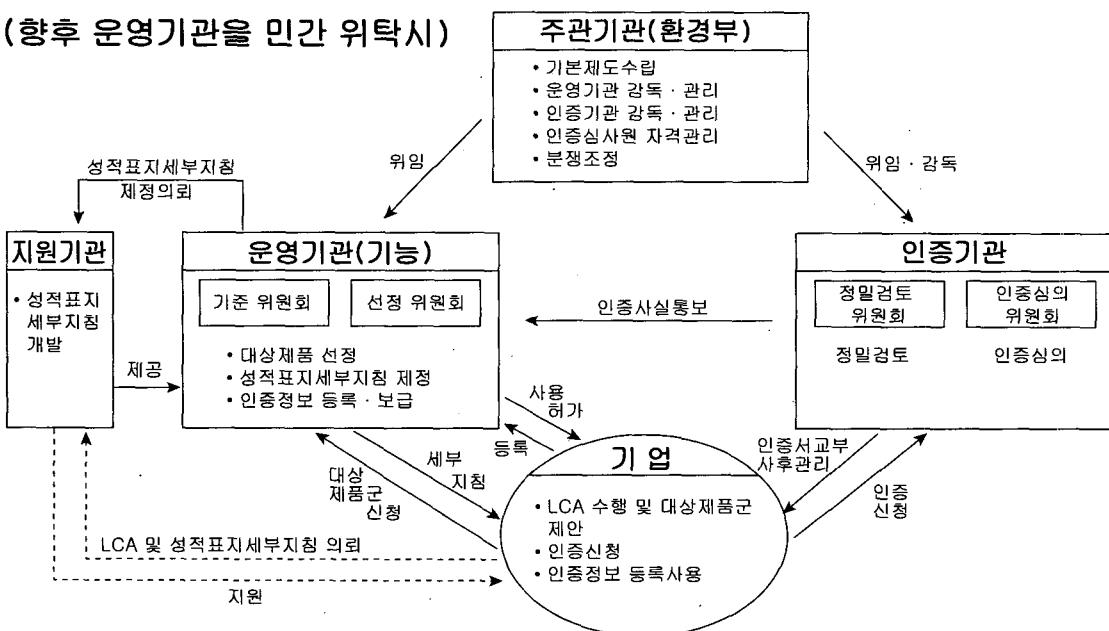
- ◎ 교육기관 지정자 : 환경부 장관
- ◎ 심사원 교육기간 : 1주일 이내
- ◎ 심사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
 - 교육전담조직 체계 및 인력 보유 현황
 - 전과정평가 등 유사연구 교육 실적
 - 교육계획
 - 교육과정의 설치 계획
 - 교육과정별 교육과목
 - 교육과정별 교육수수료
 -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

8. 기대효과

- ◎ 상품에 대한 환경선언을 통한 상품 및 기업이미지 개선
- ◎ 수출입 과정에서 상품의 환경성에 대한 보증서
 - 환경관련 비관세 무역장벽에 사전 예방
- ◎ 기업의 환경신용도 제고 수단
- ◎ 환경소비자(GREEN CONSUMER)의 욕구 충족
- ◎ 제품의 생산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의 정량적 관리 수단

9. 향후 국내 제도 운영골격(안)

(향후 운영기관을 민간 위탁시)





10. 향후 국내 제도 운영절차(안)

(향후 운영기관을民間 위탁시)

▶ 정부(환경부)

- 제도 기본계획 수립
- 운영기관 관리 감독
- 인증기관 관리 감독
- 인증심사원 자격관리
- 분쟁조정

▶ 운영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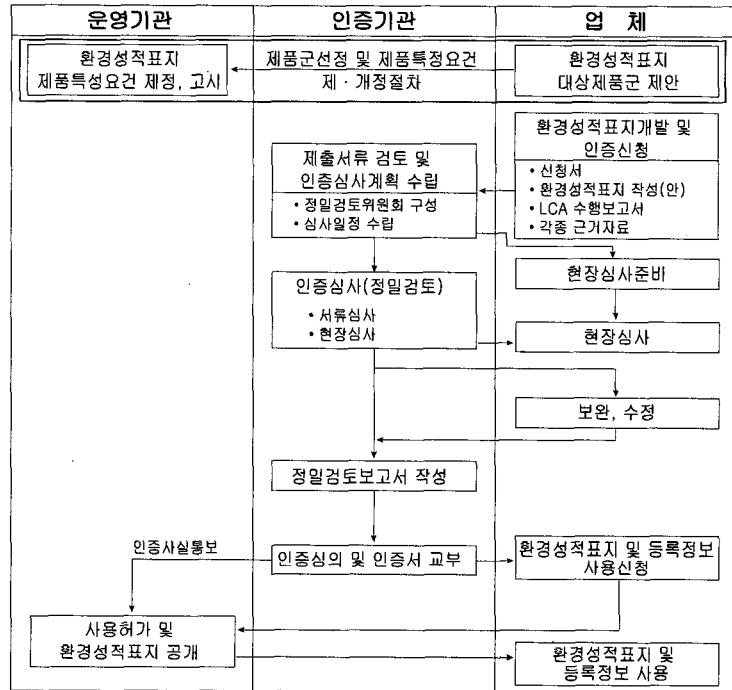
- 대상제품군 선정
- 환경성적표지 세부지침 제·개정
- 등록 및 활용촉진

▶ 인증기관

- 정밀검토, 인증업무
- 사후관리
- 이의신청 처리

▶ 기업

- 대상제품 제안
- LCA 수행
- 환경성적표지 개발 및 인증신청



- 2000년 재활용 기술지도사업 -

1. 지원대상

폐기물을 이용하여 중간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현장애로 기술 등을 지도 받고자하는 자

2. 지원내용

6개월 범위내에서 학계, 산업계, 연구소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폐기물 재 활용과 관련한 현장애로기술 등을 지도 (사업비: 업체당 15,000천원 이내로 한국자원재생공사80%, 신청업체20%부담)

3. 사업추진체계

한국자원재생공사	기술지도기관	재활용업체
신문공고		기술지도 신청
신청서접수		기술지도자와 협의
기술지도자 통보	신청기업과 협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	
사업계획서 접수	사업계획서 제출	
계획서 심의	사업계획서 설명	현장애로 기술 설명
계획서 심의결과 통보 (지도기관, 재활용업체)		
참여업체입금 확인후	사업비 신청, 수령	사업비 지급(20%)
사업비 지급(80%)	기술지도 실시	현장애로 기술 해결
사업평가, 분석	결과보고 및 정산	